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계약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윤한석(이하 '갑'이라고 한다)과 밋앤그릿(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계약에 명시한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작성한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의 귀속관계 및 '갑'과 '을'의 권리와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자 및 저작물)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신도 야근을 하나요?>

세부사항(규격): <신도 야근을 하나요?>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일체

제3조(저작권의 양도)

1. '갑'은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컴퓨터프로그램제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 지식재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작성권과 편집저작물작성권 포함)를 '을'에게 양도한다. '갑'은 '을'이 저작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데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제4조(저작권의 이전 등록)

- 1. '을'이 '갑'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한 경우 '갑'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을'에게 지체없이 양도한다.
- 2.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양도 절차를 밟기 위해 '을'은 양도에 필요한 협력을 지체없이 제공해야한다.
- 3. '을'이 '갑'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한 경우 '갑'은 저작물의 코드저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github의 Klazz/SinYa 저장소의 소유권을 아래에서 '을'이 지정한 유저네임(username)에게 이전 하여야 한다. 또한 코드 저장소의 소유권을 이전한 동시에 '갑'은 코드저장소 멤버에서 지체없이 탈퇴하여야 한다.

'을'이 지정한 소유권 이전 github 유저네임 (username): MEETANDGREET

4. 상기 1항 내지 3항은 제 6조의 1차 양도료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한다.

제5조(수익배분와 실질적 동업관계 포기)

'갑'은 저작권을 본 계약서를 통해 '을'에게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기존에 '을'로부터 약속되었던 15%의 수익 배분을 포기한다. 또한 '갑'은 본 계약서를 통해 '을'에게 저작권을 양도함으로써 게임 〈신도 야근을 하나요?〉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나아가, '갑'은 '을'과의 관계를 종료함으로써 본 계약서 작성 후 '을'에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양도료)

- 1. 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을'이 '갑'을 통해 양도받는 대가는 총 3000만원(세금포함)이다. 이를 양도료라 한다.
- 2. 양도료는 '갑'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 3. 기본적으로 본 계약서가 날인된 날을 '갑'이 양도료를 청구한 날로 본다.
- 4. 양도료는 1차 양도료와 2차 양도료로 나뉘며 1차 양도로는 1500만원(세금 포함)이며 2차 양도료는 1500만원(세금 포함)이다.
- 5. 1차 양도료는 청구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한다.
- 6. 2차 양도료는 제7조의 인수인계 업무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한다.
- 7. '을'은 양도료 지급 시 '갑'이 지정한 아래 계좌로 양도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양도료 지급 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기업은행 | 449-011319-01-013 | 윤한석 |

제7조(인수인계)

- 1. '을'이 '갑'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한 경우, '갑'은 작성한 코드에 상세한 주석을 달아 양도료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하여 '을'이 이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을'이 '갑'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한 경우 '을'은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세한 기술문서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3. '갑'은 '을'이 인수인계에 필요한 상세한 기술문서를 청구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제공하여야만 한다.

- 4. '을'이 '갑'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한 경우 '을'은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 대면 등을 통한 기술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 5. '갑'은 '을'이 기술지원을 청구한 경우 청구한 날을 포함하여 40일간 기술지원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 1. 본 계약서에 '갑'과 '을'이 날인한 경우, '갑'은 '을'과 있었던 계약서 미작성에 관련된 갈등 등 내부사정 및 본 계약 내용에 대해 인터넷 매체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 2. 본 계약서에 '갑'과 '을'이 날인한 경우, '을'은 '갑'이 게임 제작팀에서 이탈한 경과에 대해 인터넷 매체에 공표할 경우 오직 사실만을 공표해야 한다.
- 3. '갑' 또는 '을'은 위 제1 내지 2항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4. '갑' 또는 '을'은 위 제1 내지 2항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3천만원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

제9조(영업 비밀 유지의무)

1. '갑'은 제 2조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을'의 영업비밀 및 운영방식, 기타 공지되지 않는 정보 (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를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비밀

- ① 게임 포스터, 일러스트, UI를 포함한 일체의 이미지
- ② 게임 시나리오
- ③ 게임 기획서
- ④ 게임의 디자인 및 아이디어
- ⑤ BGM
- ⑥ 거래처 정보
- ⑦ 회계정보 (인건비, 원가 등)
- ⑧ 출시 일정, 기타 마케팅 전략
- ⑨ 그 외 일체의 자료
- 2. '갑'은 제 1항의 영업비밀을 절대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하며, '을'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이는 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갑'은 제 2조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을'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영업비밀이 기밀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함이 '을'의 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관 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 4. '갑'은 제 2조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을'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을 별도로 복제, 수정, 보관해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이 성립되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 5. '갑'은 '을'에게 1차 양도료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폐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6.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 7. '갑' 또는 '을'은 위 제1~6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8. '갑' 또는 '을'은 위 제1~6항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3천만원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

제10조(불가항력)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본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능하게 된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평하게 처리한다.

제11조(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저작권법과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이 계약 각 조의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회 통념과 규칙과 관행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소송의 합의 관할)

- 1.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 2. '갑'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갑'과 '을'은 이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020년 9월 5일

양도인(갑)

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 45-44

주민등록번호 : 931015-1048222

이름 : 윤한갞

양수인(을)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30길 8, 2층 301호

사업자등록번호 : 810-42-00450

이름 혹은 사업자명 : 밋앤그릿 대표자 이지민